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학과운영에 관한 내규>

1. 학과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학과장은 전임교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과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세부전공, 교과목 개설운영, 강사제청 및 수강신청지도에 관한 세부사항

- 가. 본 조형예술학과는 석사과정에 한국화, 서양화, 조소, 미술이론 전공을, 박사과정에 이론, 실기전공을 세부전공으로 운영한다.
- 나. 교과목 개설은 각 전공 교수와 의논하여 개설한다.
- 다. 교과목의 변경 신청은 교수 2/3이상의 찬성으로 학과장이 대학원 위원회에 제청한다.

3. 선수학점 관련 사항

- 가. 학과장은 신입생 중 선수학점 이수 해당자인 타계열 출신자는 반드시 선수학점 이수에 대한 사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 나. 타계열 출신자가 이수해야 할 선수학점은 석사 6학점, 박사 15학점이며, 대상과목은 학부기초, 전공 필수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4. 졸업자격 요건에 의한 사항

- 가. 박사학위 청구 논문제출자격 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대학원 학칙 제3장, 제5장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장, 제7장에 의거한다.
- 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4학기), 박사과정 2년(4학기), 통합과정 4년(8학기)으로 한다.
- 다. 수료인정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석사 24학점, 박사과정은 전공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전공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 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청구하는 자는 논문 제출에 앞서 소속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 마.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2종이 있다.
- 바. 3학기 이상 실기 재학생은(이론전공 제외) 논문 제출 전까지 학위 청구전을 하여야 한다. 단,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대체(작품발표, 연구보고서)로 신청하여 졸업할 수 있다.
- 사. 박사과정 이론전공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전까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7장 제46조 제1항에 의거, 부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 부논문 인정율

- 가. 2018학년도 2학기 이후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신청자

1)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이론전공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국외 학술지에 100%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백분율은 1/발표자수×100으로 산출하며, 지도교수가 발표자에 포함되었을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인정 환산율을 산출함.

5. 논문 심사 및 심사위원 제청에 관한 사항

- 가. 학과장은 논문 주제를 고려하여 각 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위원을 제청한다.

- 나.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의 논문 심사 신청자격을 확인한다. (외국어 시험, 종합 시험, 이수학점, 중간 공개발표 등)
- 다. 논문지도교수는 논문 심사 합격자가 기일 내에 완제본을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6. 학과 행사에 관한 사항

- 가. 소속 대학원생이 참가하는 모든 학과 행사는 실험실습비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대학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다.
- 나. 학과 행사의 개최는 사전에 운영

7. 각종 추천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연구조교, 근로조교, 각종 장학생, 취업추천 등)

- 가. 각종 추천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 나. 학과 내 연구조교와 근로조교 등 근로봉사 학생은 직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 한다.

8. 학과의 문서 및 기자재 관리(목록 작성)에 관한 사항

- 가. 학과의 비품 및 기자재 신청은 학과장이 각 전공교수와 논의하여 후 대학원에 신청한다.
- 나. 구입한 기자재 및 비품은 해당 전공 전임교수 및 학과장이 공동 관리한다.

9. 조형예술학과 정기학술세미나

- 가. 매학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논문심사’ 직전학기까지 정기학술세미나에서 2회 이상 발표해야한다.
- 다. 발표형식은 정기발표와 심사발표(중간발표, 청구전예비심사)로 구분한다.
- 라. 세미나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2 <정기학술세미나에 관한 내규> 참조. 끝.

[별첨] 1-1.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및 청구전에 관한 내규>

1-2. <석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및 청구전에 관한 내규>

2. <정기학술세미나에 관한 내규>

[서식] 1. 정기학술세미나 발표 계획서

2. 청구전 계획서

부칙. 본 규칙은 2021년 제2학기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별첨 1-1]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및 청구전에 관한 내규>

가.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박사, 석박사과정의 학위 청구 논문 제출 및 청구전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학사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학위 청구 논문 및 청구전 제출

조형예술학과 학위 청구 논문 제출은 아래 규칙에 의거한다.

1) 학위 청구 논문 : 미술실기 및 미술이론 전공자 공통

가) 종합시험

종합시험 자격	1. 교칙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시험의 자격을 갖춘 자 2. 교학팀에서 졸업요건으로 제시하는 외국어시험 통과자
종합시험	교칙에 의거

나) 중간발표

중간공개발표 자격	1. 교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공개발표 자격을 구비한 자 2.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3. 교학팀에서 졸업요건으로 제시하는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통과자
중간공개발표 및 심사	1. 학위 청구논문 제출 직전학기까지 중간공개발표 심사 2. 정기학술세미나 시 논문 관련 내용 발표 3. 심사 방법: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2인 이상 합격 판정 시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부여

다) 논문심사

논문 제출 자격	1. 교학팀에서 졸업요건으로 제시하는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통과자 2. 정기학술세미나에서 2회 이상 발표자
논문심사 자격	논문 심사 직전 학기 정기학술세미나 시 논문관련 내용 발표
논문심사	교칙에 의거

2) 청구전 개최 : 미술 실기 전공자에 한함

청구전 예비심사 조건	작품 기준: 평면작품 총합 1000호 이상, 입체작품 10점 이상
청구전 예비심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학술세미나 시 ‘청구전 계획서’ 작성 및 작품 발표(PPT형식 권장) 심사 방법: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2인 이상 합격 판정 시 청구전 개최 자격 부여
청구전 자격 조건 및 발표 형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전예비심사 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박사학위논문 제출 이전까지 청구전을 개최하여야 함 청구전의 내용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주제와 연계되어야 함 박사과정 중 제작된 신작 발표를 원칙으로 함 전시 장소 및 전시 규모는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름
청구전 본심사	심사 방법: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2인 이상 합격 판정 시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부여
비고	청구전 계획서: [서식2] ‘청구전 계획서’ 참조

[별첨 1-2]

<석사 학위 청구 논문 제출 및 청구전에 관한 내규>

가.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사의 학위 청구 논문 제출 및 청구전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학사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학위 청구 논문 및 청구전 제출

조형예술학과 학위 청구 논문 제출은 아래 규칙에 의거한다.

1) 학위 청구 논문 : 미술실기 및 미술이론 전공자 공통

가) 종합시험

종합시험 자격	1. 교직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시험의 자격을 갖춘 자 2. 교학팀에서 졸업요건으로 제시하는 외국어시험 통과자
종합시험	교직에 의거

나) 논문심사 :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대체(작품발표, 연구보고서)로 신청하여 졸업할 수 있다.

논문대체	작품발표	교직에 의거
	연구보고서	교직에 의거
논문	논문 제출 자격	교학팀에서 졸업요건으로 제시하는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통과자
	논문심사 자격	논문 심사 직전 학기 정기학술세미나 시 논문관련 내용 발표
	논문심사	교직에 의거

2) 청구전 개최 : 미술 실기 전공자에 한함

청구전 예비심사 조건	작품 기준: 평면작품 총합 1000호 이상, 입체작품 10점 이상
청구전 예비심사	1. 정기학술세미나 시 ‘청구전 계획서’ 작성 및 작품 발표(PPT형식 권장) 2. 심사 방법: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2인 이상 합격 판정 시 청구전 개최 자격 부여
청구전 자격 조건 및 발표 형식	1. 청구전예비심사 합격 판정을 받은 자 2. 석사과정 중 제작된 신작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전시 장소 및 전시 규모는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름
청구전 본심사	심사 방법: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2인 이상 합격 판정 시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부여
비고	청구전 계획서: [서식2] ‘청구전 계획서’ 참조

[별첨 2]

<정기학술세미나에 관한 내규>

가. 목적

개개인의 전공 관심 영역을 조사·연구·발표함으로써 학문적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구성원 상호간의 관심사를 이해함으로써 학문의 심화 발전을 도모함

나. 세부사항

1. 매학기 개최
2. 발표형식은 정기발표와 심사발표(중간발표, 청구전예비심사)로 구분한다.

1) 발표형식

정기발표	매학기 개인 전공 관심 영역에 대한 논문 및 작품 관련 선행연구 등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발표	중간발표	박사, 석박사과정만 해당. [별첨1-1] <박사 학위 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의 ‘1)-나) 중간발표’ 표 참조
	청구전 예비심사	1. 박사, 석박사: [별첨1-1] <박사 학위 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의 ‘2) 청구전개최’ 표 참조 2. 석사: [별첨1-2] <석사 학위 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의 ‘2) 청구전개최’ 표 참조

2) 신청형식

- 가) 정기발표: ‘정기학술세미나 발표 계획서’ 작성 후 제출
- 나) 심사발표
 - ① 중간발표: ‘정기학술세미나 발표 계획서’와 ‘중간공개발표신청서 및 평가서’ 작성 후 동시 제출
 - ② 청구전예비심사: ‘정기학술세미나 발표 계획서’와 ‘청구전계획서’ 작성 후 동시 제출

다. 정기학술세미나 관련 서식

- 1) 정기학술세미나 신청서: [서식1] ‘정기학술세미나 발표 계획서’ 참조
- 2) 청구전예비심사: [서식2] ‘청구전 계획서’ 참조

[서식1] 정기학술세미나 발표 계획서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정기학술세미나 발표 계획서			
학 번		성 명	
소 속	조 형 예 술 학 과	과 정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박사
연 락 처		E - m a i l	
* 한국 연락처가 없을 경우 e-mail 필수 기재			
발 표 형 식	<input type="checkbox"/> 정기발표 / 심사발표 (<input type="checkbox"/> 중간공개발표 <input type="checkbox"/> 청구전예비심사)		
발 표 제 목			
발 표 내용요약 (5~8줄 이내)			

* 발표내용 요약본(5페이지 이내)을 계획서와 함께 과사로 제출. (이메일 또는 과사 방문 제출)

* 발표 형식을 반드시 기입할 것.

<주의사항>

중간발표 신청 시 반드시 ‘중간공개발표 신청서 및 평가서’를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

청구전예비심사 신청 시 반드시 ‘청구전계획서’를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

상기 내용으로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세미나 발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인)

결 재	지도교수	학 과 장

[서식2] 청구전 계획서